

“2025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화성시) -

경기도 ‘화성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장은 한국환경보전원 경인지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9일
한국환경보전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명

- 2025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4년 12월 ~ 2025년 12월

주관기관

- 한국환경보전원 경인지사(이하 “보전원”이라 한다)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총 사업비(자부담 제외)				비고
	총계	국비	도비	시비	
사물인터넷(IoT)	1,512,000	840,000	336,000	336,000	

※ 사업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금액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지원금액

-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및 방지시설 종류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 부착비용 최대 90% 지원 [10% 이상 사업자 부담, 부가가치세 제외(사업자 부담)] ※ 화성시 지원 유의사항(지원범위) 내 지원

□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물인터넷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 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3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 설치 지원사업 대상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등 발행 가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 4종 사업장 및 5종 사업장으로서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을 방지시설로 설치한 사업장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사설, 방지사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사업 참여기준 및 업체 선정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환경전문공사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 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 사업장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설치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증 등을 제출하고, 구비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 승인
- 승인 이후 사물인터넷 설치 계약은 해당 사업장과 직접 체결
 - 사물인터넷 설치 계약서(선정사업장-설치업체)에 자부담 및 사업비 부가세는 사업장이 사물인터넷 설치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국고보조금은 사물인터넷 설치업체가 직접 수령 하도록 명시
- 설치 지원사업 대상 중 우선지원대상 기준으로 접수된 선착순으로 지원 사업장 선정(참여신청서 및 설치계획서 작성 양식에 적합하지 않거나, 구비서류가 누락 될 경우 사업 신청 반려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설치 지원사업 대상 중 우선 지원 대상

※ (우선지원) 아래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설치 우선지원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사설의 사물인터넷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지자체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우선순위 및 지원 범위를 정할 수 있음)

- ① 방지사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 ② 2025년 6월 30일까지 부착 대상 시설
 - 2022년 5월 3일 이전 가동개시 사업장
- ③ 신규 가동개시 대상 시설
 - 2024년 7월 1일 이후 설치(변경)신고(허가) 사업장으로 가동개시 대상기업

4 제외대상 및 지원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4종 사업장 중 2022년 5월 3일 이후 가동개시 사업장(2023년 6월 30일까지 부착 완료 대상)
- 5종 사업장 중 2022년 5월 3일 이후 가동개시 사업장(2024년 6월 30일까지 부착 완료 대상)
 - 사물인터넷 부착 시기 위반사업장으로 지원 제외

□ 지원 유의사항(지원범위)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사물인터넷 설치지원을 우선 지원
 - 추가 배출구에 연결된 사물인터넷 지원서 제출 시 별도로 신청서 제출
 - 사물인터넷 참여신청서, 설치계획서 및 구비서류 배출구별 별도 이메일 제출
 -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 전류계 최대 5개까지 지원 가능
 -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전류계, 순환펌프 전류계(흡수·세정에 의한 시설만 해당), 전기집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는 각 1개 까지 지원 가능
 - 복수형 게이트웨이 미지원
- 현장조사 시 공고일 기준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신고필증 및 배출설비 기재 내용과 사업장의 배출설비 현황이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 및 보전원은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지자체 및 보전원은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선정된 사업장은 착공신고서 제출시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변경 사항이 있을시 해당하는 사업장만 제출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승인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착공신고서 제출할 것
 -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 착공신고서 제출 못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기간 내에서 연장 요청 가능(1회에 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착공신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 설치 완료
-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는 반드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6.)”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공고문 외 기본 사업 내용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준공조건

- 제출된 사양대로 시공 및 운영될 것
 - 사업 승인 후 사양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 및 증빙자료(변경 근거, 예산 등) 보전원으로 제출하여 반드시 사전 승인 후 진행(사양대로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부분 재설치 또는 보조금 제외)
- 사물인터넷(IoT) 설치 후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측정자료 전송될 것

5 접수방법 및 절차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12. 09.(월)(09:00) ~ 2024. 12. 27.(금)(18:00)
 ※ 접수 기간 외 제출 서류 접수 불인정(신청서 메일 접수 날짜 및 시간 기준 적용)

□ 접수기관 및 방법

- 접수기관 : 한국환경보전원 경인지사
- 접수방법 : iot@keci.or.kr
 - [E-mail\(iot@keci.or.kr\)](mailto:iot@keci.or.kr)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 화성시_사업장명_설치계획서
 - 참여신청서 및 설치계획서 작성 양식에 적합하지 않거나, 구비서류가 누락 될 경우 사업 신청 반려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기타사항
 - 선착순 접수로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지자체 예산 한도 내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E-mail 접수를 진행하며, 선정 이후 원본 제출
- 사업문의 : 한국환경보전원(☎ 070-5222-2136, 2142, 2123, 2122)

□ 사업장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절차



*한국환경보전원 홈페이지(<http://www.keci.or.kr>, 페이지 상단 배너 알림 홍보 클릭)

□ 사업장 제출서류 ※ 사업신청 서류 양식에 맞춰 이메일 접수

○ 사업 신청시 제출서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붙임 2]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 3]
-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등 발행)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붙임 4]
- 사물인터넷 계측기 KS 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해당업체)
-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업체)
-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붙임 5]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붙임 6]
- 보조금반납확약서(배출업체)[붙임 7]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 사업승인 후 제출서류

- 협약서 및 착공신고서
- 최종 승인된 설치계획서 및 구비서류 등 일체 서류 원본 제출(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사업승인 후 양식은 별도 안내

○ 공사완료 후 제출서류

- 준공신고서, 공사완료보고서 및 사업정산 자료(공사비총괄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 사물인터넷(IoT) 부착완료 신고서 및 그린링크 전송확인서
- 사물인터넷(IoT) 측정자료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전송 증빙자료

※ 사업승인 후 양식은 별도 안내

○ 준공심사완료 후 제출서류

-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사업승인 후 양식은 별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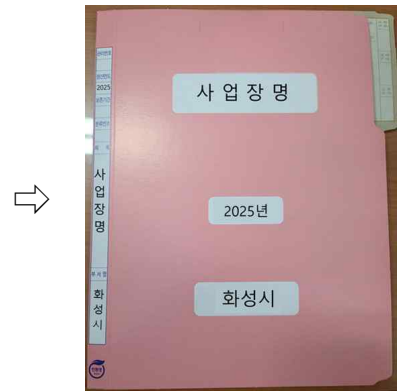
《지원안내 및 서식》

- 한국환경보전원 홈페이지(<http://www.keci.or.kr/>) 및 각 화성시 홈페이지
- 한국환경보전원 홈페이지 상단 배너 알림홍보 클릭!!
- 신청서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선정기업 설치계획서 및 구비서류 제출 예시

- ※ 사업신청서 사업장별 총 1부 정부화일 제출 요망
- ※ 신청서 1개 배출구 기준으로 작성 제출 요망
- ※ 추가 배출구 지원시 별도 정부화일 제출 필요

(우측 샘플 참고)



- 사업장 및 사물인터넷 설치업체에서는 홈페이지 공고에 게재한 구비서류 보전원 양식에 맞게 순서대로 번호 인덱스 붙여 제출
- 제출 서류의 일체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며, 사용인감 사용 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필히 제출

6 사물인터넷(IoT) 설치비, 측정기기 구성 및 사양

□ 사물인터넷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사물인터넷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단위 : 만원)

구 분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전류계*	배출시설	30	27	15	12
	방지시설	30	27	15	12
차압계(압력계)		40	36	20	16
온도계		50	45	25	20
pH계		100	90	50	40
IoT게이트웨이		160	144	80	64
VPN		40	36	20	16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 비용의 9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 미지원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구성 및 사양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구성

구분	장치의 기능	비고
측정기기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장치	
IoT 게이트웨이	측정기기에서 측정된 측정 자료를 수집 및 유무선 방식으로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치	
가상사설망 (VPN)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통신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통신장비 - 측정기기(IoT 게이트웨이) 또는 통신장치(통신모듈)에서 SSL(Secure Socket Layer) VPN 통신 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 장비 호환성·상호 운용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	
IoT 관리시스템	배출 및 방지시설 측정 자료를 실시간 전송 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리시스템 (www.greenlink.or.kr), 운영기관 : 한국환경공단 ※ 문의사항 연락처 : 1533-3301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6.) 참조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게이트웨이(Gateway)에 표시되는 가동정보와 상태정보의 단위는 그린링크의 단위와 일치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규격

-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다음과 같은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의 성적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모델명 기준)를 포함하여야 함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일반 사양>

구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설치대상	- 배출시설(공통) - 방지시설(공통)	- 여과집진시설 - 흡착에 의한 시설		- 흡수에 의한 시설
측정범위 ¹⁾	0 ~ 600A	0 ~ 500mmH ₂ O	-40 ~ 100°C	0 ~ 14pH
오차 ²⁾	±5% 이내			
동작온도	-20 ~ 60°C	-20 ~ 60°C	-20 ~ 60°C	0 ~ 80°C
형식	-	-	Pt 100Ω, 열전대 등	-
온도보상	-	-	-	0 ~ 50°C ³⁾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공통사항	(출력신호 ⁴⁾) 4 ~ 20mA (표시장치 ⁵⁾)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내구성) 실내외에서 장기간 연속 측정 시 외부의 요인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함			

- 1) 측정범위는 최대 운영조건외 1.5배 이내를 권장(측정범위의 과대 설정 지양)
 - 전류계는 측정 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차압계, 온도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2)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의 평균 오차(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평균 오차는 그린링크 누리집에 게시)
 - 3) 온도의 보상범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4) 출력신호는 Gateway와 호환이 가능한 신호이면 mA 이외의 출력신호도 가능함
 - 5) 표시장치는 Gateway의 측정값 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에서 각각 측정된 값은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 전류계에는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배출시설(배출 1, 배출 2), 방지사설 송풍기(송풍 1, 송풍 2), 방지사설 순환펌프(펌프 1, 펌프 2), 전기집진시설(전기 1, 전기 2) 등]을 표식하여야 함